

재무위원회 규정 (2024.09.05 개정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재무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예산안 작성 및 회계관리

- 1) 각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받아 정리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인준을 받는다.
- 2) 회계연도 8월에 감사를 받아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.
- 3) 회계관리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.

제 2 장 지 출

제 3 조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주관하는 정기학술대회, 보수교육, workshop 등에서의 강의 (강사, 좌장, 패널, 해외 연자의 국내 학술대회 지원)

- 1)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원과 비회원의 강사료는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한다. 단, workshop 강의의 경우, 시간, 동원되는 인력, 기자재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총무이사, 재무이사과 상의하여 결정한다.
- 2) 좌장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며 좌장과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한번만 지급한다.
- 3) 패널토의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며 좌장과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강사료에 준한다.
- 4) 해외 연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.

지역	강의료(달러)	항공료	숙박
일본, 중국	2000	강의료에 포함	지원
동남아시아	3000	강의료에 포함	지원
북미, 유럽, 그 외 지역	4000	강의료에 포함	지원

- ① 숙박 지원은 강의일 기준으로 전·후 1일이며, 조식은 지원하나 개인비용(통신, 인터넷, 비즈니스센터)은 지원하지 않는다.
- ② 추가 강의 하나당 5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.

제 4 조 각종 회의 거마비 및 교통비

1) 이사회 회의

- ① 거마비로 7만원(온라인/오프라인 동일)을 지급하며 교통비를 실비 지급한다 (왕/복 영수증 각각 1개, 근무지에서 회의장까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류비 책정 등)
- ② 회의를 개최하는 당해 도(道) 이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 숙박 가능: 예) 서울에서 회의할 경우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, 대구에서 회의할 경우 경북 이외 지역에서 오시는 경우에 해당함.

- ③ 회의가 학술대회 중에 열릴 경우는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2) 각 위원회 회의 및 외부 회의

- ① 거마비로 5만원(온라인/오프라인 동일)을 지급하며 교통비를 실비 지급한다 (왕/복 영수증 각각 1개, 근무지에서 회의장까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류비 책정 등)
- ② 회의가 학술대회 중에 열릴 경우는 따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5 조 각종 회의 및 간담회에 따른 식사비

- 1) 이사회 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에서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5만원 이하로 지출한다 (영수증 첨부 요구됨).
- 2) 이사회 회의 및 각 위원회 회의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간단한 다과, 음료(커피)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 (영수증 첨부 요구됨).

제 3 장 각 위원회의 예산 집행

제 6 조 각 위원회의 예산 집행

- 1) 당해 년도 안에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지급한다.
- 2) 1년치 예산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는 다음해 결산 전에 해당 자료와 함께 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한다.

제 4 장 학술상, 논문상, 연회비, 등록비

제 7 조 학술상 및 논문상

- 1)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지급한다.
 - ① 구연 발표자 2인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한다.
 - ② 포스터 발표자 3인 또는 4인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한다.
- 2) 공식 학회지(JSM)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 - ① 최우수상은 1 편, 상금(50 만원)과 상장(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성명 기재)을 지급한다.

- ② 우수상은 총 3 편, 상금(30 만원)과 상장(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성명 기재)을 지급한다.
- ③ 공로상은 대한수면연구학회 학술대회 직전 1 년간 JSM 논문인용횟수가 가장 많은 주저자에게 주어지며 상금 (30 만원)과 상장을 지급한다.
- ④ 우수심사자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고, 상장을 수여한다.